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잘못된 자구의 수정

○ 적용시한의 명시

나. 주요골자

○ 제3조중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로 개정

○ 제4조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개정

○ 적용시한 : 1994년 12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민귀식)

- 도시민의 생활편익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재산권, 기타권리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토록되어 있으나
-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는 제3조중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로 제4조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조례에서 적용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시한을 명시하여 타조례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본안과 같이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